
중국법에 의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Legal Study on Corporate Governance in China

김정일
한세대학교 경영학부

Jung-Ihl Kim(cityuni05@hansei.ac.kr)

요약

본 연구는 중국법에 근거한 국유회사제 기업(國有會社制 企業)의 분석을 그 대상으로 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 내부운영기구라고 하는 기업내부지배와 주식시장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선진국 지배구조와 비교 검토의 관점을 포함하여, 중국의 국유기업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의 실제와 그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내부지배구조에 관해 주주총회, 취체역(取締役)과 취체역회(取締役會), 감사역회(監査役會) 등 회사기관론(會社機關論)의 관점으로부터, 중국 내부지배기구의 구축을 향한 방향을 탐구하고 있다. 중국의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출자자의 소유권, 취체역회의 법인재산권, 경영자의 법인대리권과 감사회의 감독권이 상호제한, 상호연계하고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 중심어 : | 중국법 | 국유기업(국유회사제 기업) | Corporate Governance | 주식회사 | 내부지배구조 |

Abstract

With an analysis of government owned corporations based on Chinese law as a subject and in the light of comparing and assessing intra-company domination called internal management organization with the domination structure of already established advanced na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lity and possibility of company domination structure of Chinese government owned corporations. Especially, the intra-company domination structure in China from the points of view such as general meeting of stock holders, director and board of directors, and board of auditors, this study examines the direction toward which internal domination organizations in China form. Also, related to chinese corporations, the study proposes the model in which the possession right of general meeting of stock holders, corporation property right of board of directors, corporation representative right of the senior executive and superintendency of board of auditors are mutually restricted and inter-connected.

■ Keyword : □ Chinese Law □ Government Owned Corporations □ Corporate Governance □ Corporation □ Intra-Company Domination Structure □

접수번호 : #081019-002
접수일자 : 2008년 10월 19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03일
교신저자 : 김정일, e-mail : cityuni05@hansei.ac.kr

1. 서론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에는 3가지의 중요한 정책이 취해지게 되었다. 첫째, 1992년에 제기되었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이며, 둘째, 1993년에 제기되었던 국유기업에 관한 목표로 현대기업제도의 확립이며, 셋째, 1997년에 제기되었던 공유제(公有制) 경제형식의 다양화(多樣化) 전환이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는 직접 국유기업제도의 개혁과 연관되어, 국유기업의 개혁은 점차 정책적인 조정단계에서 제도의 전환단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현대기업제도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근대적 회사제도 또는 법인회사제도와 동일한 것이다. 그 특징은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다시 말해 출자자 소유권과 법인재산권의 분리를 기초로 한 법인지배구조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제도이다. 이러한 국유회사제(國有會社制) 기업의 소유권 관계는 회사의 지배(corporate governance) 구조에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 및 업무집행의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의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의 패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채용하고 있는 패턴과 같은 업무집행과 그 감독을 하나의 기관(중의회 또는 取締役會)이 담당하는 일층제(一層制), 독일이 채용하고 있는 패턴과 같은 업무집행 기관과 감독기관을 분리해 각각 개별로 행하는 이층제(二層制), 일본과 같은 취체역회(取締役會)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경영감독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지만 그 밖에 업무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감사역회(監査役會)가 법제화 되어있는 제도이다.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형태에는 각각 메리트(merit)와 디메리트(demerit)이 있으며, 어떠한 내부지배기구 또는 회사직접 컨트롤에도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간접 컨트롤 또는 외부지배기구가 필요하다[1]. 따라서 중국의 기업지배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보완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모델의 장점을 흡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주총회, 취체역과 취체역회, 감사역회 등 회사기관론(會社機關論)을 중심으로 중국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명확히 하고, 다음으로 중국

내부지배기구의 구축을 향한 방향을 탐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의 주식회사로서는 주주총회 출자자의 소유권, 취체역회의 법인재산권, 경영자의 법인대리권과 감사회의 감독권이 상호제약, 상호연계하고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II. 이론적 배경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한 기업의 소유와 경영(지배)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주식회사의 발전에 의해 주식소유가 고도로 분산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2]. 이와 같은 주식소유의 분산화가 주식회사 내부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소유와 지배의 분리현상이 생겨나고 경영자 지배의 상황을 발생시켰다. 이것이 근대 주식회사의 현저한 논점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화한 주식회사에서는 그 업무내용의 복잡함이나 전문성의 증대 등에 의해 기업경영에 관한 전문 능력을 보유한 인재의 확보를 강하게 요청하게 되었다[3].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전문경영자는 주식소유를 통한 기업의 지배 및 지도의 필요성이 없으며, 자본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문에 있어서 그 존재 의의가 인정되어지고 있다[4].

이러한 환경 가운데 기업은 누구의 소유인가, 또는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가 새롭게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논점은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폭 넓게 논의되어지고 있는 문제이다[5].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보다 기본적인 관점에서부터 기업지배구조론의 관점, 즉 주식회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식회사론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소유자 지배론[6], 그리고 현대 주식회사 지배론의 발생지에 있는 서구 선진국에 있어서 주식소유와 기업지배를 둘러싼 학설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7].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하에 공유(公有)경제가 핵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이론 및 기

업지배구조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III. 중국의 주식회사 형태 및 그 특징

1995년 중국에서는 “조대방소(抓大放小)”라는 개혁안을 표명하고 국유기업의 회사화(會社化)를 향한 정리통합에 착수했다. 이 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단일 투자주체의 것은 법에 기인하여 단독출자의 유한책임회사로 개조할 수 있으며, 복수 투자주체의 것은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개조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산업별 총괄회사(중국에서는 統括會社로 표기)는 점진적으로 주식회사로 개조한다. 기업집단의 중핵기업 가운데 조건이 정비된 것은 주식회사로 개조해도 무방하다. 소규모의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주식회사화(株式會社化)하는 이 외에도 주식합작제(株式合作制), 민유화(民有化)와 흡수합병 등 대담한 정리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8].

중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에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다시 말해 유한책임회사는 일반적 유한책임회사와 국유단독출자회사로 분리된다. 주식회사는 일반적 주식회사 이외에 상장회사, 그리고 국외 상장회사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로 분리된다[9].

국유독자회사(國有獨資會社)는 국가로부터 출자에 관해 수권(授權)된 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수권된 부문이 단독으로 출자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이다. 국가가 유일한 소유자이지만, 출자자의 유한책임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유한기업에 가까운 기업형태이다. 국유기업의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해 설립한 국유의 유한기업이다.

국유주식회사는 국유주도혼합(國有主導混合) 국유주식회사와 국유지주회사(國有持株會社)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국유주도혼합 소유주식회사는 국유기업의 또 다른 국유기업, 민간기업과 외자기업(外資企業) 등의 자본 참가를 점차 인정해 가지만, 국유가 보다 많은 웨이트를 보유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회사에 가까운 주식회사 형태이다. 회사법인제도하에서 출자자에 의해

형성된 주식회사는 출자자 이외의 법인지위를 획득하고, 회사의 재산을 처치하는 각종 권력을 소유한다. 회사 법인재산권에 대응하여 회사의 내부관리는 회사지배기구에 의해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회사 재산권제도는 회사지배기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10].

국유지주회사는 국유자산의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국유자산운영회사나 국유기업이 지주회사가 되어, 그 그룹 내의 기업을 총괄, 감독하는 회사형태이다. 국유지주회사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주관부문을 그대로 국유지주회사로 개조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대형 및 중형의 국유기업이나 기업집단 가운데 중핵기업을 국유지주회사로 개조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기존의 투자회사나 국유자산경영공사(國有資產經營公司)를 국유지주회사로 개조하는 방법이 있다. 지주회사는 그 사업활동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분류할 수 있다[11].

국유주식회사는 국유독자회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메리트가 있다. 첫째, 소유자간에 상호 견제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유지하고 회사발전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단일 주주하에서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또한 주주는 기업에 들어가 주주총회, 취체역회를 성립시킬 수가 있으며, 회사와 정부의 관계는 대등한 법률관계가 되며 정부의 간섭을 방지하기에 효과적이다. 국유독자회사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소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분리에 불리하다. 셋째, 다원주주는 다원적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각 방면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규범적인 기업지배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독자회사에서는 실제 지배권은 개별인이 파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의 규범운영에 불리하다. 넷째, 국유회사는 다양한 용자의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 국유독자회사의 국가만의 자본기구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IV.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내부지배구조체제

중국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취체역회와 사장으로 그 임원 조직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취체역회는 회사의 법인대표인 취체역회의 회장이나 업무집행의 책임자인 사장을 선임함과 동시에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사장은 취체역회의 결정방침에 따라 그 수권 범위 내에서 일상의 회사업무 집행을 주재하는 개별 상설기관이다.

중국의 취체역회 회장은 회사를 대표하는 점에서는 일본의 대표취체역과 동일하지만, 중국의 취체역회 회장은 업무집행자인 사장의 감독권을 가지는 이외에 취체역회 폐회 중에 취체역회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는 등 일본의 대표취체역과 비교해서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12]. 대표취체역 회장은 사장을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취체역회의 하부기관으로 임원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미국의 구체적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임원제도의 존재에 가깝다고 여겨진다[13]. 감사회(감사역회)는 주주 대표와 종업원 대표로 구성되어 취체역과 총경리(總經理, 사장)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그 분화(分化)의 형태로 보면, 독일의 경영책임을 노사 쌍방이 분담하는 노사공동결정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취체역의 멤버 중 한 사람은 직원, 노동자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어져 있다. 중국은 3기관 분리제로 민주적이며 상호견제적인 기관구조 조직이다[14]. 이것은 일본의 주주총회를 입법기관, 취체역을 행정기관, 감사회를 사법기관으로 행해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주주총회는 일본보다는 더욱 중요한 지위에 있다. 그것은 현재 상당수의 주식회사가 국유기업에서 이행(移行)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자본의 대부분을 역시 국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체역의 멤버는 출자기관이 임명하고 파견한다. 대표취체역 회장 및 부회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양상이다. 이와 같은 국유기업에서 개조된 국유회사의 재산권관계는 기업지배구조의 기구에 반영되고 있다. 회사제 기업의 지배구조 기구는 주주총회, 취체역회, 사장, 감사역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삼회사권(三會四權)의 분권 견제의 조직제도와 운영메커니즘(mechanism)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회사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조직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회사법을 충

분히 조사 연구하여 제정된 것으로 국제적인 표준에 상당히 근접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5]. 그러나 규정의 비교만으로는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형태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률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선진국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 괴리의 정도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의 방향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법률상의 규칙을 실제 회사에 적용시켜, 유용한 법으로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총회의 출자자 소유권, 취체역회의 법인재산권, 경영자의 법인대리권 및 감사역회 출자자의 감독권 등 삼회사권의 상호계약성, 상호연계성을 가진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1. 주주총회와 출자자 소유권

전통적인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주요한 원인은, 회사의 재산권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국유회사제로 개조한 주요한 목적은 재산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있다. 즉, 출자자의 소유권과 법인재산권의 분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국유자본의 소유자는 지주(持株)에 의해 출자자 소유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 회사의 경영관리권은 취체역회와 대리인에 맡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자자 소유권과 그 실현성을 살펴 보면, 국유회사에서는, 국가는 출자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국가(소유자)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배당을 받는 권리와 경영지배권을 가지지만, 역시 국가의 소유권을 「법률상 소유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어진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주주는,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 따라서, 회사의 기본경영 방침이나 취체역의 선임 및 그 경질 등의 결정권한을 소유한다[16].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중국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사결정에만 그치고, 결의의 집행, 감독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주총회에 모든 권한이 집중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법률적인 정책적 배려에 기초를 두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17].

2. 취체역회의 법인재산권과 경영자의 법인 대리권

주식회사의 내부지배구조 가운데, 취체역회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취체역회는 회사 법인재산권의 실질적인 운영기구이다. 회사의 「삼회사권」 제약규제 가운데, 취체역회는 행사하는 경영결정권이 회사권력의 핵심이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경영의 결정 및 구체적인 운영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취체역회는 직접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법인재산권의 주체이다. 취체역회는 출자자와 경영자를 연결하며, 회사 경제활동의 총지휘 부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유회사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문제는 그 규범화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회사 취체역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3. 감사역회의 출자자 감독권

중국의 국유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출자자인 국가는 재산의 컨트롤권을 회사법인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출자자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해 단지 최종결정권을 행사만 하였다. 여기서, 취체역회에 대한 컨트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출자기관이 국유자산에 관한 감독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결정되어, 그 행사 감독기구로서 감사역회가 설치되어졌다.

특히 감사역회는 출자자 감독권의 주체이다. 감사역회 구성원은 3명을 밑돌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주주대표 및 일정비율의 종업원대표로부터 구성되어진다. 종업원대표는, 직원, 노동자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임되어진다. 종업원의 감사역은 취체역, 지배인 및 재무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 감사역의 임기는 3년이고, 임기만료 후, 재임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중국 주식회사의 관리제도는, 회사제 기업의 주주총회, 취체역회, 최고경영자, 감사회의 「삼회사권」이라는 분권제약의 조직제도로 되어있다.

이러한 주주총회, 취체역회, 최고경영자, 감사회라는 「삼회사권」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된다. 첫째, 재산권 구조이다. 즉, 회사내부의 재산권 주체간의 관계이다. 주주총회는 출자자 소유권의 주체이고, 취체역회는 법인재산권의 주체이다. 주주총회로부터 선임되어진 감사회는 출자자 감독권의 주체이고, 취체역회로부터

임명되어진 최고경영자는 수권되어진 후, 법인대리권의 주체가 된다. 둘째,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이다. 기업지배구조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주주총회의 최종 컨트롤권, 취체역회의 경영결정권, 최고경영자의 경영권, 감사회의 감사권은 각각 상호독립, 상호제약 및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회사의 경제목표를 실현하고, 전체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삼회사권」은 회사의 재산권구조이지만, 회사의 관리구조이기도 하다. 양자는 상호의존, 상호제약의 관계에 있다. 먼저, 재산권구조는 관리기구의 기초이다. 주주총회의 출자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최종 컨트롤권도 있다. 취체역회의 법인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 경영결정권도 있다. 최고경영자의 법인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 경영권도 있다. 감사회의 출자자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독직권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관리기구는 재산권구조의 실현 형태이다. 규범화되어진 관리기구가 정상으로 운영하는 조건하에서 「삼회사권」은 정상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재산권 구조의 각 기능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기업지배구조론의 기본적인 관점은 대규모화하여 큰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 도달한 현대기업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업내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 현실적으로는 기업내부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경영자이므로, 상기의 과제는 경영자가 불공정하거나 비효율적인 기업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체크 혹은 모니터링해 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관한 것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때, 향후의 중국 내부지배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 고려된다.

1. 기업내부의 감독기능 강화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감사역회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18]. 이러한 형태는 중국의 국유회사에 있어서도 유효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유소유권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유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피해는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사적(私的)소유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 따라서 국유소유권은 사적소유권보다 침해받기 쉬우며, 사람들도 국유소유권의 손해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유기업의 무분별한 행위는 국유소유권 사용자에 대한 감독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이다. 말하자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생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국유회사에 독일회사의 감사역회 경험을 활용하여 감독기관을 설치하고, 법인지배구조 내에서 지위를 높이며, 그 직권범위를 확대하고, 인사이더 컨트롤(insider control)에 대한 체크를 강화함으로써, 출자자인 국가의 이익을 지켜야 할 것이다.

2. 회사 종업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제도

독일회사의 법인지배구조 가운데, 회사 종업원의 민주적 관리와 민주적 참가를 중시하고, 종업원 감사역의 비율이 높은 것은, 중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 법인지배구조 내에서 종업원은 독립적인 기구가 된다. 종업원은 생산요소의 중요한 부분 즉, 노동력요소로서 투입되어진 생산의 물적 자원과 결합시켜, 회사에 새로운 제품을 창출해 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을 증식시킨다. 그러므로, 회사의 생산에 있어서 종업원의 적극성을 발휘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중국 국유회사의 공유소유권의 특성적 측면에서 보면 종업원의 민주적 참가, 민주적 관리를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이다. 종업원 대표에게 감사역회가 충분한 발언권과 경영감독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3. 이해관계자의 상호이익

이해관계자의 상호이익은 영국과 미국기업에 있어서, 기관투자가가 경영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기업이, 주주와 경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테이크 홀더(stake holder)에 의해 구성되어진 제도라는 생각에 의거한다[19]. 중국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의 모델을 선택할 때에는, 대주주를 대표하는 정

부, 일반주주, 경영자, 당의 조직, 종업원, 은행,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기업에 대해 직접, 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주주, 종업원, 고객뿐만이 아닌 각종 항의 그룹이나 동업자 단체, 경합업자(競合業者), 노동조합 등을 포함한다. 기업내부에 있어서는 스테이크 홀더는 먼저 주주이며 다음으로 경영자, 종업원이다.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메인 뱅크(main bank), 거래처, 그 밖의 채권자이다. 미묘한 문제로서는 공장 등이 입지하는 지역이 스테이크 홀더에 포함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가 갈라지고 있다.

스테이크 홀더가 경영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법은, 각각의 기업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것과, 회사기관을 통해 행하여지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킬 수도 있으며, 완화시킬 수도 있다. 종업원은 노동조합을 통해 경영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소비자는 시장에 있어서 독점이 성립되어 있지 않는 한, 다른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회사기관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경영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주식을 소유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하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 이외에, 법률 등에 의해 취체역회에 사외(社外) 취체역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

4. 업무직능 분화의 명확화

미국과 독일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자를 감독하는 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중국의 경영감독기구를 구축할 때에도, 업무집행과 그 감독을 각각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감사역 또는 사외 취체역의 설치를 정식 기관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J. Scott, *Corporate Business and Capitalist Class*, Oxford University Press, pp.3-6, 1997.

[2] A. A. Berle and G. C.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1991.

[3] J. Burnham, *The Managerial Revolution*, 1941.

[4] (バー), ミーンズ, 近代株式會社と私有財産, 北島忠男譯, 文雅堂, p.107, 1959.

[5] E. S. Herman, *Corporate control, Corporate Power*, 1981.

[6] アダムスミス, 諸國の富 大内兵衛 松川七郎譯, 岩波文庫, 1966.

[7] (バーナム, 經營者革命, 武田泰雄譯, 東洋經濟新聞社, 1956.

[8] 吳家駁, 中國の國有企業改革の進展, 総合研究開発機構編, 中國市場經濟の成長と課題, NTT出版, p.193, 1999.

[9] 志村治美, 奥島幸康編, 中國會社入門, 日本經濟新聞社, p.121, 1998.

[10] 中國會社法, 第54條

[11] 謝次昌, 財産權運用機構の規範をめぐり, 倪吉祥編, 國有資産財産權運用機構の理論および實踐, 經濟科學出版社, p.7, 1995.

[12] 奥村宏, 法人資本主義, 朝日文庫, pp.145-147, 1991.

[13] 高橋俊夫,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 神戸大學大學院研究室編, 經營學辭典, 中央經濟社, p.309, 1999.

[14] 十神恭一, 李飛, 公司法的理論と實踐, 中國商法出版社, p.239, 1994.

[15] 深尾光洋, 森田泰子, 企業ガバナンス構造の國際比較, 日本經濟新聞社, pp.73-74, 1997.

[16] 村上亨,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多角的研究, 同文館, p.43, 1999.

[17] 志村治美, 奥島幸康編, 中國會社入門, 日本經濟新聞社, p.123, 1998.

[18] 高橋俊夫,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日本とドイツの企業システム, 中央經濟社, p.6, 1995.

[19] 植竹晃久, 仲田正徳, 現代企業の所有, 支配, 管理-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と企業管理システム

△ ミネルヴァ書房, p.11, 1999.

저자 소개

김정일(Jung-Ihl Kim)

정회원



•1998년 3월 : OSAKA CITY UNIVERSITY 경영학과(경영학석사)

•2002년 3월 : OSAKA CITY UNIVERSITY 경영학과(경영학박사)

•2002년 4월~현재 :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Asian Research Institute 객원연구원

•2004년 4월~2005년 3월 :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강의

•2005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국제경영, e-비즈니스